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01. 9. 10.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1년 9월 3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 부 일 자 : 2001년 9월 3일 회부
- 다. 상 정 일 자 : 제84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01년 9월 10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정진)

가. 개정이유

-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근거없이 징수하던 출판사 및 인쇄소등록 수수료
를 법률과 조례에 적합하도록 폐지정비하며
- 2001.5.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2001.9.25부터 시행됨에 따라
 - 그동안 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
게임물유통관련업등록신청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 자치구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
례를 개정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은 신고업종으로서 등록수수료 징수를 구조례에 의거 징수하
였으나, 행정자치부의 고시 및 2001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조문을 폐지정비
- 급속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에는 유통관련업을 등
록제로 운영하던 것을 일부 업종에 대해 행정규제의 완화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 문화산업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게임제공업중 전용게임장업을 일반게
임장업과 청소년 게임장업으로 구분되었으며
 - 청소년게임장업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
운영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종별 등록·신고 및 변경대상의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김대완)

동 개정조례(안)은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1조와 제2조
에 의거 출판사 또는 인쇄소를 등록하거나 등록사항 변경신청인에 대하여 본 조례에 의거
지난 1988.5.1부터 징수하던 수수료를 2001년 7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시정요구와
2000.8.31 고시된 행정자치부의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거 본 조례 해당항목을 폐지하는
것이며, 또한 2001.5.24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6473호)이 개정됨에 따라
지금까지 서울특별시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음반·비디오물 등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따른 수수료를 자치구조례에 의거 징수해야 됨에 따라 이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 제3조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중 제2호의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중 “마”목을 신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과 정부의 권고사항으로 특이한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의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97
----------	-----

제출년월일 : 2001. 9. 3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개정이유

- ☐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에 근거없이 징수하던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 수수료를 법률과 조례에 적합하도록 폐지 정비하며
- ☐ 2001년 9월 25일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 개정(2001.5.24. 법률 제6473호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에 따라
 - 그동안 유통관련업자 등록신청에 관한 수수료 징수를 서울특별시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유통관련업자등록신청에관한수수료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것을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징수토록 함에 따라 수수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임.

2. 주요골자

- ☐ 출판사 및 인쇄소 등록은 신고업종으로서 등록수수료 징수를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의 근거 없이 구 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조문을 폐지 정비
- ☐ 급속한 문화산업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종전에는 유통관련업을 등록제로 운영하던 것을 일부 업종에 대해 행정규제의 완화의 차원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였고
 - 문화산업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를 위해 게임제공업중 전용게임장업을 일반게임장업과 청소년 게임장업으로 구분되었으며
 - 청소년게임장업과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환운영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도록 하는 등 업종별 등록·신고 및 변경대상의 수수료 금액을 개정하는 것임.

3. 개정내용

- ☐ 출판사(인쇄소)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삭제)

현행	개정 (안)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6)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삭제 (6) 삭제

□ 음반·비디오물게임물 유통관련업자 등록·신고에 관한 수수료징수(신설)

종 목	단 위	수 수 료 (원)	비 고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신고업]			
(1)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청소년게임장업 신고)	1건	5,000	
(2)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등록업]	1건	2,500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5,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2,500	
(5)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1건	30,000	
(6)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	
(8)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9)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 (등록업+등록업) · (등록업+신고업)	1건	· 해당등록 수수료+5천원 · 2개 이상의 등록업을 복합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의 수수료로 함.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 복합유통 제공업 등록수 수료의 1/2로 함.	

4. 참고사항

- 관련근거 :
 - 출판사및인쇄소등록에관한법률
 -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 합의사항 : 합의되었음
-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따로붙임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관련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제2호 중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 “38종”을 “46종”으로 하고, 동조와 관련 별표 제2호 “나”목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중 “(1),(6)”을 삭제하며,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46종)

종 목	단 위	수 수수료(원)	비 고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인쇄소) 등록 신청	1건	1,000	삭제
(2) 출판사(인쇄소)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	삭제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신설
[신고업]			
(1) 복합유통·제공업 신고	1건	5,000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청소년게임장업 신고)			
(2) 복합유통·제공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2,500	
[등록업]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5,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2,500	
(5)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1건	30,000	
(6)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	
(8)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9)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신청	1건	· 해당등록 수수료+5천원	
· (등록업+등록업)		· 2개 이상의 등록업을 복합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의 수수료로 함.	
· (등록업+신고업)			
(10) 복합유통·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 복합유통 제공업 등록수 수수료의 1/2로 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 조 문 대 비 표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 각종 인 · 허가 신고사항(38종⇒46종)

현 행	개 정 (안)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1) 출판사(인쇄소) 등록신청 (6) 출판사(인쇄소) 등록 사항 변경등록 신청	나. 신고 · 신청에 관한 사항 (삭제) (삭제)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라. 생략	라. 현행과 같음		
(신설)	마. 유통관련업 신고 · 등록에 관한 사항		
	종 목	단위	수수료(원)
	[신고업] (1) 복합유통 · 제공업 신고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 + (청소년게임장업 신고)	1건	5,000
	(2) 복합유통 · 제공업 신고사항 변경	1건	2,500
	[등록업] (3)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5,000
	(4)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2,500
	(5) 일반게임장업 등록신청	1건	30,000
	(6)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7)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
	(8)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10,000
	(9) 복합유통 · 제공업 등록신청 (등록업+등록업) · (등록업+신고업)	1건	· 해당등록 수 수수료+5천원 · 2개 이상의 등록업을 복합 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의 수 수수료로 함.
	(10) 복합유통 · 제공업 등록신청 변경신고	1건	· 복합유통 제 공업 등록수수 료의 1/2로 함